

〈별표84〉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

약관에 규정하는 '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'은 '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294호, 2023.1.1. 시행)' 제7조(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)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
대상	특정기호
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'〈별표84-1〉 중증질환자(일반암) 산정특례대상질병 분류표', '〈별표84-2〉 중증질환자(갑상선암·기타피부암·유사암) 산정특례대상질병 분류표' 및 '〈별표84-3〉 중증질환자(뇌·수막의 양성신생물) 산정특례대상질병 분류표'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	V193

주)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해당 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판단합니다.